

**공청회 및 뉴욕시 규정 제68조 제10장 개정안 및 제28조 60장 추가  
제안 관련 의견 제공 기회 공지**

개정 공고된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HRA")과 주택보전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는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에 C절, 뉴욕시 규정 제28조에 60장을 추가하여, 낮은 임대료, 공실,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재활을 위해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CityFHEPS 프로그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노숙자였던 개인과 가족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가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HRA는 또한 CityFHEPS 프로그램의 가입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16일자 HRA 비상 규정에 따라 CityFHEPS A절의 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공청회는 2023년 9월 15일, 10:00 AM에 줌을 통해 원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이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줌 (영상 및 음성):**

<https://www.zoomgov.com/j/1603165040>

또는 [www.zoom.us](http://www.zoom.us)에 방문해 "Join a Meeting"(미팅 참여)를 클릭한 뒤, 미팅 ID 1603165040

**전화(음성만): 1-646-828-7666**

안내 음성이 나오면 다음 미팅 ID 입력: 1603165040

원 탭 모바일 번호: +16468287666, 1603165040#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개정 공고된 규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NYC 규정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를 통해 HRA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의견을 NYCRules@hra.nyc.gov에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 "CityFHEPS 개정안"을 기재해 주십시오.
- **우편.** 다음 주소로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HRA Rules  
c/o Office of Legal Affairs  
150 Greenwich Street, 38<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본인이 CITYFHEPS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 팩스. 917-639-0413번으로 의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CityFHEPS 개정안"을 포함시키십시오.
- **공청회에서 발언.** 929-221-7220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2023년 9월 15일 당일까지 [NYCRules@hra.nyc.gov](mailto:NYCRules@hra.nyc.gov)로 이메일을 통해 공청회 의견 개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순서대로 발언자를 호명하며 최대 3분까지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까?** 의견서 제출 마감일은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견서는 2023년 9월 15일까지 HRA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참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공청회에서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편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NYCRules@HRA.nyc.gov](mailto:NYCRules@HRA.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929-221-7220번으로 전화를 통해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통지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11일 오전 9시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고된 규정과 관련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고된 규정에 관해 온라인으로 제시된 의견은 웹사이트 <http://rules.cityofnewyork.u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안과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서신으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사본, 구두로 접수된 모든 의견의 요약본이 HRA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HRA 및 HPD는 무슨 권리로 해당 규정을 입안하는 것입니까?** 뉴욕시 헌장 603조, 1043조, 및 1802조 참조. 제안된 해당 규칙은 이번 회계연도에 대한 HRA 및 HPD의 규정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RA 및 HPD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HRA 및 HPD 규정은 뉴욕 지방 자치단체법 (Rules of the City of New York)의 제68조 및 제28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성립 과정을 관할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HRA 및 HPD 신규 제정 또는 개정 시 HRA는 반드시 뉴욕시 헌장 제1043조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공지사항 역시 시 헌장의 제1043(b)절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 근거와 목적 상세

제안된 해당 규칙에 따르면 CityFHEPS 프로그램의 몇 가지가 변경됩니다. 첫째, 제안된 해당 규칙은 CityFHEPS 바우처 보유자가 원활하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아파트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범 사업(제68조 10장 C절에 규정될 예정)을 수립합니다. 뉴욕시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저조한 가용도 문제는 특히 저렴한 주택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며, 월세가 \$1,500 미만인 아파트는 1% 미만입니다. 노숙자 방지를 위한 뉴욕시의 “이웃을 위한 주택: 주택과 홈리스를 위한 청사진” 계획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뉴욕시는 뉴욕

시민이 안전하고 좋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해당 규칙에 명시된 내용처럼 “문 열기” 이니셔티브는 재활 주택을 CityFHEPS 바우처가 있고 노숙자였던 뉴욕 시민에게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수리가 필요한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재활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환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비어 있는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 수가 줄어들도록 지원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의 가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CityFHEPS 바우처 보유자가 보호소에서 영구 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비어 있고 안전하고 거주하기 위해 큰 수리가 필요한 소수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상환 보조금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안정화, (2) 2022년과 2023년에 모두 비어 있는 경우, (3) 법적 임대료가 해당하는 지정 임계값 미만인 경우. 환급 보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사전 승인을 위해 먼저 건설 비용 견적을 HPD에 제출해야 합니다. HPD는 세대가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비용 견적이 상환 대상 작업 항목에 대한 최대 비용 수당 목록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소유자는 HPD에서 예비 자격 기준 판정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대상 가구가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는 행정 법령 27-2056.4(a-1)절의 납 성분 페인트 검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한 경우, HRA가 소유자와 협력하여 해당 주택을 적절한 가구에 임대하고 해당 주택에 HPD가 승인한 최대 \$25,000의 최종 수리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 새로운 환급 보조금 프로그램은 인적자원관리국과 주택보전개발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둘째, 제안된 해당 규칙은 CityFHEPS 바우처의 자격 요건을 개정합니다. 2023년 6월 16<sup>일</sup>, Eric Adams 시장은 CityFHEPS 프로그램의 구매 참조 서신이 필요한 가구의 적격 보호소 체류 자격 요건을 제거하고 구매 참조 서신이 필요한 가구의 근무 요건을 주당 10시간으로 표준화하여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을 개정하는 긴급 규칙에 서명했습니다. CityFHEPS 프로그램 개정안은 임대 지원 바우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더 많이 연결하는 동시에 뉴욕시 쉼터 시스템 내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시는 이와 같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규정을 영구히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CityFHEPS 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독신 성인 및 가족의 90일 체류 기간 요건을 제거합니다.
- CityFHEPS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이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주당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고, 독신 성인의 주당 10시간 근무 요건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쉼터 인구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 쉼터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사하는 가구의 경우, 이전 연도의 어느 시기에든 이사하려는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HRA가 CityFHEPS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긴급 상황에 대해 채택한 규칙은 제안된 해당 규정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공한 후 최종 규정을 채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0일 더 유효합니다.

뉴욕시 헌장의 603, 1802절과 1043절은 HRA 및 HPD가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뉴욕 사회 복지법의 34, 56, 61, 62, 77, 및 131-a절은 HRA가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밑줄 표시된 부분이 신규 조항입니다.  
삭제된 텍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1.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의 10- 01절 (a)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f) **"CityFHEPS"** 혹은 **"CityFHEPS 프로그램"**이 본 장의 A절에서 쓰일 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A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ityFHEPS"** 혹은 **"CityFHEPS 프로그램"**이 본 장의 B절에서 쓰일 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B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ityFHEPS" 혹은 "CityFHEPS 프로그램"이 본 장의 B절에서 쓰일 때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B절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2.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 10- 01절에 다음과 같이 5개의 정의를 알파벳 순서로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한다.**

"CityFHEPS C절 담당 기관"은 DSS 및 HPD를 의미한다.

"HPD"란 뉴욕시 주택보전개발부(New York City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를 의미한다.

"C절 세대"는 CityFHEPS C절 담당 기관이 이 장의 C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 및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는 세대로 지정한 세대를 의미한다.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은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과 이 절에 따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환급 보조금을 의미한다.

**§ 3.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 10- 02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0-02 CityFHEPS 프로그램 운영.**

HRA가 CityFHEPS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본 장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CityFHEP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2] 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A절에 기술된 세입자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및] B절에 기술된 프로젝트 기반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및 C절에 기술된 세대 수리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세입자 기반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한다면 어느 세대라도 자격이 있는 가구가 선택한 거주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은 HRA가 B절 세대라고 지정한 특정 세대에 연계된 자격이 있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한다. 세대 수리

프로그램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유효한 시범사업으로, 본 장의 C절과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제한된 수의 임대주만 비어 있는 임대료 안정화 주택에 필요한 수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세입자 기반 CityFHEPS 임대료 지원 바우처가 있는 가구에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4. 뉴욕시 규정 제68조 10- 04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10-04 쉼터 거주자 및 노숙자의 최초 자격 기준 및 승인.

(a)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 중이거나 거리 노숙 중인 가구가 본 절에 따라 CityFHEPS 임대료 보조에 대한 구매 참조 서신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의 총 소득이 FPL의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18세 이상의 단독 구성원으로 구성된 가구는 구성원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며 뉴욕주 노동법 652 또는 뉴욕 행정 규정 제12조 146부에 따라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 총 소득이 FPL의 200%를 초과할 수 있다.

(2)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하도록 HRA가 가구에 요구할 수 있다.

(3) 비워 둠.

(4) 가구가 섹션 8 또는 68 RCNY 9장에 설명된 HOME TBR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연방 또는 주 주택 혜택을 받을 자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HRA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수락할 수 있다.

(5) 해당 가구는 FHEPS에 대한 자격이 없어야 한다.

(6) 가구 구성원이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452.9절에 따라 HRA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해당 가구는 그런 결정을 야기한 가정 폭력 가해자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가구가 현재 DHS 가족 보호소에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1부 및 352부에 따른 DHS의 결정으로 보호소에 거주할 자격을 받아야 한다.

(8) 가구는 노숙 중이거나 폐쇄가 임박한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래의 그룹 A 또는 그룹 B에 속해야 한다.

(A) 그룹 A: 가구가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고 (1) 현재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68 RCNY § 10-04(b)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충족하거나 HRA 보호소 체류 자격이 있거나, (2) 현재 HRA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룹 A에 속한다.

(i) 가구가 [(AA) 18세 미만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BB)] 보조금 미지원 고용이나 적격 보조금 지원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합쳐 최소한 주 [14]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지난 30일간 그러한 고용으로 얻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단, 해당 가구에 모범적이고 일관된 근무 경력이 있고 최근에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매주 적어도 [14] 1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구 사항으로부터 국장의 승인 하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ii) [가구가 18세 이상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고 지난 30일간의 보조금 미지원 고용 또는 적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근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

(iii) 가구에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거나, 월 공공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고 문서화된 당사자의 장애에 근거하여 연방 장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HRA에서 결정한 구성원이 있다.

[(iv)] (iii) 가구에 60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v)] (iv)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85.2(b)(5)에 의거하여 PA 근무 활동을 면제 받은 18세 이상의 구성원이 있다.

(B) 그룹 B: 가구가 현재 HRA 또는 DHS 보호소에 거주하고 아래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그룹 B에 속한다.

(i) 가구에 재향 군인이 있다.

(ii) 가구에 CityFHEPS 적격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시 기관이 추천한 개인이 포함되었고, 국장의 평가에 따라 가구의 특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HRA 또는 DHS 보호소 체류 기간을 단축하려면 CityFHEPS 임대료 보조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b) [보호소 적격 체류 및 제한 규정

(1) 보호소 체류 자격: 해당 가구가 역일로 최대 10일의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전 최소 90일간 DHS 보호소에 거주했다면 68 RCNY § 10-04(a)(8)(A)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DHS 독신 성인 보호소 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68 RCNY § 10-04(a)(8)(A)의 목적에 따라 보호소 체류 자격을 갖춘 것이다. (A) 지난 365일 중 최소 90일 이상을 DHS 보호소에 거주했다. 보호소 체류 자격을 얻은 가구는 유형이 다른 보호소 사이로 옮겨 다녀도 68 RCNY § 10-04(c)에 따라 구매 참조 서신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거리 노숙 중인 가구는 HRA 또는 DHS 보호소에 입소해도 구매 참조 서신 받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보호소 체류 자격 제한: 국장은 프로그램의 생존력을 지키기 위해 제한 기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68 RCNY § 10-04(a)(8)(A)의 목적에 따라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가용 자금 유무를 평가하여 보호소 적격 체류 개시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 국장은 주택 시장 상황, 보호소 가동률 및 가용 자금 유무를 추가 검토한 후에 제한 기한일을 철회할 수 있다. [(c)] 가구가 68 RCNY § 10-04(a)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국장은 가구에 대해 구매 참조 서신을 발행한다. 해당 서신은 만료일을 포함하며, 해당 가구가 승인 시점까지 68 RCNY § 10-04(a)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d)] (c) 가구가 CityFHEPS 구매 참조 서신을 받은 후 CityFHEPS 임대료 지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는 뉴욕시에서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거주지를 최소 1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리스 계약이 있어야 한다. 가구는 전년도에 해당 거주지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단, 가족이 퇴거되었거나 건축을 위해 퇴거되었거나 세대의 상태로 인해 강제로 이사해야 했고 임대주가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아파트의 모든 수리를 완료한 경우, 지원 주택에서 퇴거가 되었고 세입자가 지원 주택 세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거나 아파트에 이동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조적 접근 기능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장이 재량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2) 가구에 18세 미만인 자가 있을 경우 리스 또는 기타 임대 계약은 아파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 세대에 대한 임대료는 반드시 세대가 위치한 곳에 있는 비견될만한 세대와 비교할 때 합리적이어야 하며 절대 최대 월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68 RCNY § 10-15(h)에 따른 추가 지급이 적용되는 세대라면 규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가구는 최소 1년간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단, 해당 세대가 임대료 허용에 관한 정부 규정의 대상이면 적용되는 정부 규정에 따라 연중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가구가 현재 공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 가구는 뉴욕 행정 규정 제18편 352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6) 공공 지원 수령 자격이 되는 모든 가구 구성원은 공공 지원을 받으며 공공 지원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 (d) 승인 시, HRA는 해당될 경우 68 RCNY § 10-06 또는 68 RCNY § 10-07에 따라 가구의 월 임대료 지원 지급액을 계산한다. 68 RCNY § 10-0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 5.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은 다음과 같이 C절을 새롭게 추가하여 개정한다.**

C절: CityFHEPS – 임대료 안정화 세대 수리 프로그램

§ 10-24 C절 세대.

(a)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세대는 뉴욕시에 위치해야 하며 1969년 임대료 안정화법, 임대료 안정화 법령, 1974년 긴급 임차인 보호법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후속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임대료 안정화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2) 세대는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에 따라 예비 자격 인증서 신청 당시 비어 있어야 하며, 뉴욕주 주택 및 지역 개발부서(DHCR)의 2022년 및 2023년 연례 임대료 등록에 빈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세대의 법적 임대료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 개발부서(DHCR)에 2022년 및 2023년 임대료 등록을 위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제출 기간에 적시에 등록되어야 하며, 다음 임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A) 1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가구의 경우 \$1200.

(B) 2개의 침실이 있는 가구의 경우 \$1300.

(C) 3개 이상의 침실이 있는 가구의 경우 \$1400.

(b) 다세대 주택은 3가구까지 C절 세대로 지정될 수 있다.

(c) DSS는 해당 소유자가 (i)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의 요건에 따라 HPD로부터 최종 자격 인증서를 받고 (ii) 본 장의 10-25절의 b항을 준수할 경우,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d) CityFHEPS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은 세대당 \$25,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f) CityFHEPS 프로그램은 자금 소진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10-25 소유자 의무.

(a) 예비 자격 인증서 및 최종 자격 인증서는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의 요건에 따라 발급된다. 소유자는 예비 자격 인증서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명시된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수리에 대한 환급금은 뉴욕시 규정 제28조 60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 소유자는 HPD로부터 최종 자격 인증서를 받은 후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구매 참조 수신을 보유한 가구와 1년 또는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0-26 CityFHEPS C절 임대료 지원금 및 C절 세대 수리 보조금 계산.

(a) 가구를 위해 지급되는 월 CityFHEPS 임대료 지원금은 본 장의 10-06절 (a)항 및 (b)항에 따라 (i) 본 장의 10-05절 (a)항에 명시된 최대 월 임대료 또는 (ii) 뉴욕주 주택 및 지역 개발부서(DHCR)의 연례 임대료 등록에 명시된 해당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된다.

(b) 본 장의 10-20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가구 구성, 소득, 최대 월 임대료 또는 CityFHEPS 세대의 실제 임대료 변동과 관계없이 갱신 시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c) 소유자가 본 장의 10-25절을 준수할 경우, 해당 세대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1) HRA는 소유자에게 HPD의 최종 자격 인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해당 금액은 \$25,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HRA는 첫 달 임대료 전체와 이후 3개월 치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기의 내용과 관계 없이, HRA는 첫 달 임대료만 선불로 받겠다는 임대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

(d) 본 장의 10-06절 (d)항 및 본 조의 (c)항 (1)호에 기술된 지급액을 지불한 후, HRA는 해당 가구가 자격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가용 자금이 있는 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 지급액을 매달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한다. 단, HRA가 뉴욕시 노숙 문제 타개책 마련(Turning the Tide on Homelessness in New York City)이라는 계획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의 재량에 따라 필요 시 CityFHEPS 임대료 보조금의 추가액을 미리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27 추가 C절 조항.

C절 세대를 임대하려면 가구가 본 장의 10-04절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해당 가구는 세입자가 선택할 경우 규정 제28조 60-02절 c항 4호에 따라 CityFHEPS C절 담당 기관의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통과한 뉴욕시 거주지에 대해 1년 또는 2년의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뉴욕시 규정 제28조는 60장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0장  
CityFHEPS 임대료 안정화 세대 수리 프로그램

§ 60-01 범위, 해석, 정의.

(a) 규정의 범위. 본 장은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 C절과 함께 뉴욕시의 특정 거주 세대의 건축에 대한 환급 보조금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관리한다.

(b) 해석. 본 장은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 C절과 함께 해석한다.

(c) 정의. 본 장에 사용된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장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대문자 용어는 뉴욕시 규정 제68조 10장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BLDS. "BLDS"는 HPD의 건물 및 토지 개발 사업부 또는 후속 부서를 의미한다.

점유 증명서 "점유 증명서"는 A급 다세대 주택과 관련하여 뉴욕시 건축부에서 발급하는 점유 증명서를 의미한다.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은 필요에 따라 명시된 변경에 대해 HPD가 수립하고 갱신한 최대 달러 한도 금액의 표를 의미한다.

건축부. "건축부"는 뉴욕시 건축부를 의미한다.

DSS. "DSS"는 뉴욕시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적격 건축. "적격 건축"은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에 명시되어 있고 2023년 4월 19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주거 세대의 변경을 의미한다.

HPD. "HPD"는 뉴욕시의 주택보전개발부를 의미한다.

RCNY. "RCNY"는 뉴욕시 규정을 의미한다.

§ 60-02 신청 절차 및 서류.

a. 모든 신청서는 뉴욕시 FHEPS C절 담당 기관에서 승인한 양식과 방식으로 HPD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세부 사항을 작성한 신청서만 접수된다.

b. 예비 자격 인증서.

1. RCNY의 제68조 10장 C절 10-24절 a항 및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 세대는 C절 세대로 지정되는 예비 자격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예비 자격 인증 신청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이 예비 자격 인증 신청서는 (i) C절 세대 수리 보조금이 청구될 적격 건축을 설명하고, (ii) 해당 적격 건축 비용에 대한 견적을 명시하고, (iii) 대상 가구가 RCNY 제28조 10-24절 a항 및 b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신청자의 선서를 포함해야 한다.

3. HPD는 해당 신청자에게 단일 체크리스트로 해당 신청서의 결함을 통지한다. 해당 신청자는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역일 14일 이내에 모든 결함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4. 예비 자격 인증서 신청이 승인되면 HPD가 신청자에게 예비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DSS에 직접 사본을 제공한다.

5. 신청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HPD가 신청자에게 판정 결과를 안내하는 서신을 발급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동일한 주거 세대에 대한 예비 자격 인증서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신규 신청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한다.

c. 최종 자격 인증서 신청.

1. C절 세대로 지정되기 위한 최종 자격 인증 신청서는 건축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최종 자격 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청구한 비용과 실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구성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서류.

(B) 예비 자격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i) 대상 주거 세대에 대한 점유 증명서 또는

(ii) 건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해 증명되었으며 HPD가 인정할 수 있고 적격 건축과 함께 발급된 건축부 허가서, 또는

(iii) 그 외에 위 사항 중 어느 것도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공인 건축사 또는 공인 전문 엔지니어의 진술서 및 소유자의

진술서, 작업 계약서 사본, 송장, 취소된 수표 또는 HPD가 요구하는 기타 지급 증빙 서류, HPD가 만족할 수 있는 예비 자격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자 진술서 등 HPD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

(C) 해당 세대가 뉴욕시 행정법 27-2056.4절 a-1항의 납 성분 페인트 검사 요건 및 해당 행정법 27-2056.8절의 턴오버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서류.

3. HPD는 최종 자격 인증 신청서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단일 체크리스트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해당 신청자는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역일 20일 이내에 모든 결함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4. BLDS 검사. 최종 자격 인증서 신청에 대한 HPD의 검토가 완료되면, BLDS가 세대 및 세대가 위치한 건물의 안전 및 거주 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 HPD는 해당 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결함을 단일 체크리스트로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신청자는 모든 결함을 수정하고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역일 14일 이내에 BLDS에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5. 주택이 BLDS 검사를 통과하면 HPD가 신청자에게 최종 자격 인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DSS에 직접 사본을 제공한다. 해당 인증서는 적격 건축의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을 명시한다. 단 해당 금액은 \$25,000를 초과할 수 없다.

§ 60-03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 HPD는 RSMean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유사한 건축 비용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기반으로, 적격 건축에 대한 환급 한도액을 지정하는 인증된 합리적인 비용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NEW YORK CITY LAW DEPARTMENT  
DIVISION OF LEGAL COUNSEL  
100 CHURCH STREET  
NEW YORK, NY 10007  
212-356-4028**

헌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

규칙 표제: CityFHEPS 규정 개정(영구 규정)

참조 번호: 2023 RG 064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

본인은 이 사무국이 뉴욕시 헌장 1043(d)절에 따라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검토하였음을 인정하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법 조항을 인가받기 위해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ii) 기타 관련 규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 (iii) 실행할 수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좁은 범위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iv)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정의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규정이 부과하는 요건에 대한 근거와 목적을 밝히는 진술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s/ STEVEN GOULDEN  
뉴욕시 변호인 대행

날짜: 2023년 8월 13일

NEW YORK CITY MAYOR'S OFFICE OF OPERATIONS  
253 BROADWAY, 10<sup>th</sup> FLOOR  
NEW YORK, NY 10007  
212-788-1400

헌장 1043(d)절에 따른  
인증서/분석

규칙 표제: CityFHEPS 규칙 개정(영구 규칙)

참조 번호: HRA-35

규정 제정 기관: 인적 자원 관리국

본인은 본 사무국에서 뉴욕시 헌장 제1043(d)절의 요건에 따라 위에 언급된 개정 공고된 규정을 분석하였음을 인정하며 상기 참조된 개정 공고된 규정에 대해 다음을 확인합니다.

- (i) 각각의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작성됨
- (ii) 각 규제 대상 지역사회에서 본 규정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규정 준수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절감함
- (iii) 본 안은 위반과 관련된 위반, 위반사항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 처벌의 변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s/ Francisco X. Navarro  
뉴욕시 시장 운영실

2023년 8월 13일  
날짜